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7.(목) 11:00 < 7.28.(금) 조간 > 배포 2023. 7. 27.(목)

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 산업부,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하 정책협의회(위원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전문성을 긴밀히 연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 27.(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 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 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갖는 특징이 있어 보호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제도 시행, 조·수사, 처벌, 지원 등) 영역과의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의 전문성(기술분석, 유출사례분석 등)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함께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선두 주자(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기술 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 라고 평가하고,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업기술 정책협의회에서는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 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담당자	사무관	조부임 (044-203-4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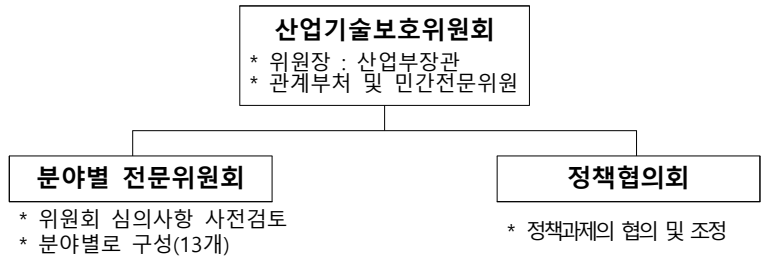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요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 **(역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 방향 결정과 국가핵심기술 지정·수출·해외 M&A승인 등 심의

○ **(하부기능)**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심의 지원), **정책협의회**(정책과제의 협의)를 두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

▹ **(구성)** 산업부(위원장: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 및 기관 공무원

* (관계부처)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특허청, 국정원 등

▹ **(기능)**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 관련 **정책과제 협의·조정**

□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 **일시/장소** : '23. 7. 27(木) 14:00~15:30 / 서울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

○ **참석** : 산업부(위원장: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특허청, 해수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 **진행** : 모두발언 → 안건발표 → 자유토론

○ **의제**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체 운영 강화방안

참고 **정책협의회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기술보호 중요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 심화중
→ 기술보호의 중요성도 증대

○ 기술보호의 영역은 전통적인 물품·기술의 수출통제를 넘어 인력, 연구활동, 투자 등으로 확대 추세

○ 기술유출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막대한 기대이익 상실, 연구자의 창의력에 타격, 기업의 성장본능에 악영향 등 다양하고 심각한 피해 야기

□ **(정책방향)**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촘촘한 보호제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제도실효성 및 민간 수용성을 강화

❶ **(시의성 있는 제도개선)** 연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그 간 다양화된 기술유출 수법에 대한 제도개선 사안들을 망라하여 담고,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도 강화(판정명령, 보유기관 등록제 등)

❷ **(제도실효성 및 수용성 강화)**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국가핵심기술 전면 현행화 및 현장중심 기술보호 제도*마련

* 예시) 업종별 심사제도 간소화방안 마련, 수출심사 전산시스템 본격 운영

❸ **(부처간 협력강화)** 각 부처의 기술보호 제도시행 권장과 기술보호 정책간 긴밀한 소통 및 환류체계 구축

-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분기별 개최)하여 부처간 정책 및 제도이행 협력 강화

* 설치근거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